

2013년 제1회 행정사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1.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③ 시보기간은 시보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④ 시보임용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 ⑤ 시보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정답 ⑤]<출제의도> 시보기간은 정규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 시보임용

우리나라는 5급 공무원의 경우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6개월 동안을 시보로 지정하고 있다.

- ① 실무를 예비적으로 습득시키는 것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에 있다. 즉, 채용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은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모두 판단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선발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종적인 판단과정 혹은 시험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정규공무원이 아니다.
- ④ 4급 이상 및 고위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9조 (시보 임용)

- ① 5급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42.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직위해제·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 기관의 장이 한다.
- ③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①]<출제의도> 징계제도와 직위해제를 구분하는 지문이다. 직위해제는 징계제도가 아니다.

경징계에서 중징계순서 암기가 중요하다.

<참고> 징계제도

(1) 개념

징계제도란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 신분을 변경·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징계의 종류

- ①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② 경징계
 -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급 정지
 - ㉡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2개월간 승급 정지
- ③ 중징계
 - ㉢ 정직(停職)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며 18개월 간 승급이 제한된다.
 - ㉣ 강등(降等) :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며 이와함께 보수승급도 18개월동안 제한<국가공무원법 개정(2008. 12. 31 시행)>
 - ㉤ 해임(解任)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금전적 비리(뇌물·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8을, 5년 이상은 1/4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4을 감액지급한다.
 - ㉥ 파면(罷免) : 해임과 같이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4을, 5년 이상은 1/2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2을 감액지급한다.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1.6.27, 2005.12.30, 2008.6.27>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43. 국세 또는 지방세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 ① 국세 -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 ④ 제주특별자치도세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⑤ 경상남도 창원시세 - 재산세, 자동차세

[정답 ③]<출제의도>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므로 광역자치단체 재원이다.

<참고> 지방세 분법<2011. 1. 1 시행>

- (1)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됨
- (2)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통폐합·간소화 됨
- (3) 기초자치단체는 목적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 (4) 지방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이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가 아니고 특별시·광역시세이다.
- (5)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이며, 등록면허세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자치구세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이다.
- (6)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①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② 등록세 납부 → ③ 등기 • 내년부터: 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② 등기	
②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 부과지방법 및 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면허세·등록세(취득무관분) →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7) 지방세 분법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44.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②]<출제의도> 한국형 옴브즈만 제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강 국민권익위원회

(1)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의의 및 근거

고충민원처리(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하며 행정의 적정성과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2.29 시행)

(2)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설치(국무총리 소속으로 의무적 설치)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고, 고충민원의 접수에 의하여 비로소 조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옴부즈만제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형 옴부즈만 혹은 옴부즈만에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되고 있다.
- ②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조 제1항).
- ③ 위원장 등의 임명·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2항).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국회가, 1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제4항).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제5항).

- ④ 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고(제15조 제1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제2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⑤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제16조 제1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제3항).

1.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제4항).

- ⑥ 위원의 겸직금지 : 위원은 재직 중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제17조).
-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제18조 제1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2항).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3항).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2항).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3항).

(3) 관할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12조).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110번)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9조 제1항).
- ② 소위원회(재량)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0조 제1항).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

- ③ 분과위원회(의무)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1조).
- ④ 전문위원(재량)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제22조 제1항).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2항).
- ⑤ 사무처(의무)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제23조 제1항).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항).
- ⑥ 자문기구(재량) :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24조 제1항).

- ⑦ 공무원 등의 파견 :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위원회에 공무원이 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 ·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항).
- ⑧ 운영상황의 보고(대통령과 국회) 및 공표 :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제2항).

제2장 고충민원

(1) 의 의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 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 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고충민원의 종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 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 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 · 법령 ·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 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 ·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에 관한 민원

제3장 부패방지

(1) 부패방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

- ① 신고의 주체 : 국민은 누구나.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 ② 신고의 방법 및 처리기간
 - ㉠ 신고의 방법 : 기명의 문서(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신고대상과 부패행 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함
 - ㉡ 신고의 처리기간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함(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③ 신분보장
 - ㉠ 신고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공직비리제보자도 신분보장의 대상에 포함됨
 - ㉡ 신고자(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포함)가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 한 것으로 추정함
 - ㉢ 신분보장에 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을 신설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함

④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절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보상제도 강화

(3) 부패방지 관련 기타 사항

①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 부패행위를 강요·제외·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함

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삭제되었음

③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④ 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는 물론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요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⑤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재정신청의 범위가 고위공직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어 협소함

(4)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서명(300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가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신청에 의한 조사 : 고충민원신청 접수에 따른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조사권의 규정이 없으며 사전 심사권이 없으므로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⑦ 법률기관 : 헌법적 기관이 아닌, 법률적 기관으로서 안정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⑧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처리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합의의 권고 및 조정 : 고충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다수인과 관련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조정(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도 가능하다.

⑩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 :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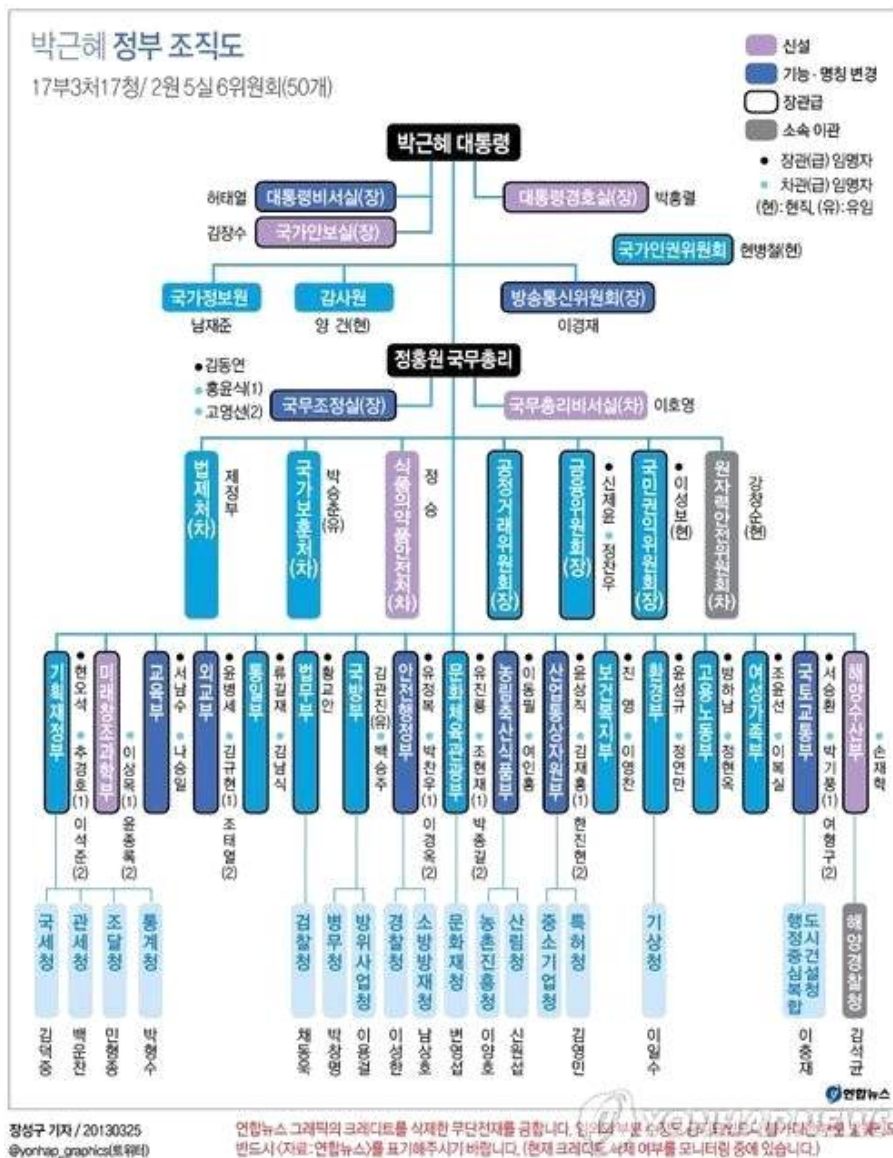
⑪ 감사의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및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⑫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ombudsman으로서 매년 운영상황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고할 수 있다.

45.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일부 중앙부처가 변경되어 왔다. 현 정부의 중앙부처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
- ② 미래창조과학부
- ③ 안전행정부
- ④ 교육인적자원부
- ⑤ 해양수산부

[정답 ④] <출제의도> 박근혜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개칭하였다.



46.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②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 ③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④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전대차관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④]<출제의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7. 리플리와 프랭클린 (R. B. Ripley & G. A. Franklin)은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집행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들이 제시한 정책유형 중 어떤 정책에 관한 설명인가?

정부는 특정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몇몇 개인이나 기업(집단)에게 특정한 기간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한 기간 후에는 자격조건을 재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경쟁적 규제정책
- ② 보호적 규제정책
- ③ 상징정책
- ④ 분배정책
- ⑤ 재분배정책

[정답 ①]<출제의도> 규제정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참고> 정책의 유형

Ripley와 Franklin의 견해

구 분	집행가능성	안정성	갈등 정도	이념 정도	정부활동 축소 압력
분배정책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낮음	낮음
재분배정책	낮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경쟁적 규제정책	보통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다소 높음
보호적 규제정책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1) 추출 정책

- ① 조세, 병역, 노역 등과 같이 국내적·국외적 환경으로부터 물적·인적 자원을 추출·동원해 내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② 예컨대 토지수용, 병역, 조세징수정책 등이 있다.

(2) 분배 정책[Non Zero-sum : 비영화(非零和)]

- ① 개인, 집단, 기업, 지역사회 등 인구의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이득의 분배에 관한 정책이다.
- ② 공원, 사회간접시설, 도로, 항만, 비행장 건설, 기업체에 창업지원금이나 수출보조금 지급, 아파트 대출금 등이 있다.
- ③ 18C 말 미국 토지정책(공유지 분할)에서 유래한다.
- ④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3) 재분배 정책

- ① 소득·재화 그리고 권리 등을 분배함에 있어서 많이 가진 자들로부터 보다 많이 추출해서 적게 가진 자들이나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분배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이다. 이는 분배의 평등을 위해 소득·가치·재화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 ② 영세민에게 아파트대출금저리용자, 빈민층을 위한 식품구입권제도, 빈민층에 대한 교육·취로사업, 부유세, 누진세, 종합부동산세, 극빈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나 특별의료보험제도 등이 있다.
- ③ 정책대상 집단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며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 ④ 행정이 환경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다.
- ⑤ 분배정책에 비해 정책의제화가 곤란하다.

●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비교 ●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① 국민이 수익자 → 조세로 충당	① 저소득층이 수익자 → 고소득층이 비용부담자
② 특혜정책	② 규제정책
③ 국민들의 욕구확대	③ 국민들의 감축욕구
④ 정책의제 용이	④ 정책의제 곤란
⑤ 경쟁적 규제정책	⑤ 보호적 규제정책
⑥ 갈등, 이념, 사상 저하	⑥ 갈등, 이념, 사상 초래
⑦ 정책집행 순응	⑦ 정책집행 불응
⑧ Routin화 용이	⑧ Routin화 곤란
⑨ 보수주의	⑨ 진보주의

(4) 상징 정책

국민에 대한 상징적인 호소에 의존하려는 정책으로서 국경일, 애국지사 동상 건립, 애국가, 반공이념, 광화문사거리애 건국 60주년기념관 건립 등이 여기에 속한다.

(5) 구성 정책

- ① 1972년 Lowi가 연구한 유형으로서 구성정책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정부기관의 신설, 폐지, 선거구의 조정(게리맨더링), 공무원 연금 정책, 공직자 보수와 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등이 속한다.
- ③ 정부기관의 신설 또는 개편이나 관할구역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일명 체제정책이라고도 한다.
- ④ “게임의 규칙들(rules of game)”에 관한 것이며, 그들은 정부의 총체적 기능(overhead function)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권위적 성격(nature of government authority)을 띤다.

(6) 규제 정책

- ① 직접규제정책 : 가격승인, 품질규제 등
- ② 간접규제정책 : 과태료 부과, 보조금 지급
- ③ 경제적 규제정책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말한다. 이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독과점 횡포 방지, 부당이득방지, 부당한 가격차별방지)와 생산자 보호(과당경쟁방지, 산업육성, 불공정한 기업 간 경쟁방지)이고 그 종류에는 가격규제, 품질규제, 생산량규제, 공급대상·조건·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있다. 경제적 규제에는 포획현상이 나타난다.
- ④ 사회적 규제정책 : 인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신장시키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비자 보호규제, 환경규제, 산업안전규제, 사회적 차별규제가 이에 속하며 피규제집단으로부터 포획의 가능성이 낮다.
- ⑤ 경쟁적 규제정책(혼합정책)
 - ㉠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혜를 부

여한다(분배정책).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 항공사에게 중국노선권을 허가하는 행위

㉡ 공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는 정책이다(규제정책).

☐ 요금규제 행위

㉢ 낚시면허증, 항공노선허가권, 약사·의사면허증, CATV 허가권 등의 인·허가와 관련된다.

㉤ 보호적 규제정책: 사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규제정책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며, 정책의 형성 및 입법단계에서 피규제자들은 정책창안자들을 적대시하여 갈등이 집행단계까지 지속된다.

☐ 근로기준법 준수, 환경영향평가기준 제시, 최저임금제, 항공·철도요금 조정 등이 속한다.

㉦ 자율적 규제정책: 특정 집단·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정책(규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규제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집행기능까지 위임시키는 것)이다.

☐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율적 규제정책도 규제정책에 속한다.

48. 중앙정부의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은 것은?

ㄱ. 정당 ㄴ. 국무총리 ㄷ. 대통령 ㄹ. 이익집단
 ㄴ. 전문가집단 ㄷ. 시민단체 ㄹ. 언론 ㄹ. 부처장관

① ㄱ, ㄴ, ㄷ, ㄹ, ㄹ

② ㄱ, ㄷ, ㄹ, ㄷ, ㄹ

③ ㄱ, ㄷ, ㄹ, ㄷ, ㄹ

④ ㄴ, ㄷ, ㄹ, ㄷ, ㄹ

⑤ ㄴ, ㄷ, ㄹ, ㄹ, ㄹ

[정답 ③]<출제의도>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이문제는 지문을 먼저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나머지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29. 행정 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②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선거권의 행사에 의한 통제

⑤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

[정답 ③]<출제의도> ③은 내부통제이다.

<참고> 행정통제의 유형

길버트(Gilbert)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통제주체와 작용방향에 따라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분류하였다.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공식성	통제유형	통제내용
외부 통제 (정치, 행정2원론)	외부 · 공식통제	입법통제	정책결정권, 예산심의, 재정통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사법통제(사후적)	행정소송, 관례 등
		옴부즈만제도	행정감찰관(ombusman)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사무
내부 통제 (정치, 행정1원론)	외부 · 비공식통제	국민통제	선거, 투표, 이익집단, 여론, 시민참여 등
	내부 · 공식통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임명권, 행정입법, 행정개혁
		정책 및 기획통제	17부3처17청에 의한 통제
		운영통제(관리통제)	정부업무평가
		요소별 통제	법제통제, 예산 및 결산통제, 정원 및 인사통제 등
		절차통제	보고와 지시, 품의제,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등
		감사원에 의한 통제	직무감찰, 회계감사, 사후적 통제 등
		중앙통제	자치단체에 대한 인사 · 조직 · 관리 · 재정상 통제
	내부 · 비공식통제	계층제적 통제	조직 내 명령복종관계를 전제로 상관이 부하를 통제
		행정윤리	자발적 행동기준
		대표관료제	사회 각 계층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
		공무원노조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보호제	내부적 · 자발적 · 비공식적 통제
		비공식조직	행정문화

50.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타나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들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여 책임행정 확보가 가능하다.
- ②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관할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로 이원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②]<출제의도> 국가의 일선기관을 말한다.

<참고>특별지방행정기관

☐ 개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서 그 소관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 특성

- (1) 국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부처이기주의적 목적이 결합되어 설치되었다.
- (2)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는 보조금의 교부, 자금의 대부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 (3)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적 연결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 (4) 1990년대 말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오히려 통합정비되고 있는 추세이다.
- (5) 인접지역과 상호 유기적인 협동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 (6) 일선기관의 기능을 소극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의 단위사업, 중점사업 등을 능동적 입장에서 추진·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 관할구역 설치시 고려요인

페슬러(J. W. Fesler)는 다음과 같은 고려요인을 들고 있다.

- (1) 정치적 고려
그 지역의 압력단체 또는 정치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선기관을 설치하게 된다.
- (2) 행정상 편의
주민들의 행정상 편의를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설정한다.
- (3) 사무의 성질
일선기관이 취급하는 사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 (4) 업무량
일선기관 상호간의 업무량이 균등하도록 관할구역을 설정한다.
- (5) 통솔범위
상급기관과의 통솔범위와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도록 관할구역을 설정한다.
- (6) 타 기관과의 관계
일선기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 유형

- (1) 영·미형
주민자치의 전통이 강하고 지방이 주체가 되는 영국, 미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아 위임사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선기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 (2) 대륙형

프랑스, 독일 등 단체자치의 대륙형에서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의 수권하에 국가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 국가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일선기관이 된다.

(3) 우리나라

보통지방행정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거나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세관, 우체국, 지방국세청·세무서 등이 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 ①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 ②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 ③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외청적 소속기관이다.

(4) L. H. Gulick의 분류

- ① 전지형(全指型)은 중간일선기관의 형태가 없는 경우이다.
- ② 장완단지형(長腕短指型)은 중간일선기관이 지방에 가까이 있는 경우이다.
- ③ 단완장지형(短腕長指型)은 중간일선기관이 중앙에 가까이 있는 경우이다.

(5) 화이트(White)의 분류

- ① 수속형 : 중앙의 지휘감독하에 중앙의 수속처럼 움직이는 일선기관(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우체국, 세무서, 세관 등 국가의 하급행정기관)과 유사
- ② 보조금액형 :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중앙의 업무를 대행하는 일선기관
- ③ 계약형 :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설기관이 일선기관의 업무를 대행
- ④ TVA형(독립공사유형) : 다목적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선기관

☐ 장 · 단점

장 점	단 점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광역적 추진 ② 관리와 감독이 용이 ③ 중앙관서는 정책의 수립·결정·기획에 주력 ④ 사무배분의 기준과 업무수행절차, 행정기술의 획일성·통일성	① 인원, 예산의 증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저해 ③ 신속결정 곤란 ④ 행정절차의 번잡, 고객의 혼란과 불편의 문제초래 ⑤ 주민참여 곤란 및 자치의식 저해 ⑥ 책임행정의 결여

5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공익추구를 핵심가치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추구를 핵심가치로 한다.
- ②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 ③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 ④ 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을 갖는다.
- ⑤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원칙이 지배하지만 경영은 고객에 따라 대우를 달리 할 수 있다.

[정답 ③]<출제의도> 공,사행정의 차이점을 묻는 지문이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다.

<참고>공·사행정의 차이점(정치·행정1원론, 공·사행정2원론)

구 분	공행정(행정)	사행정(경영)
주 체	국가·정부	사기업·민간기업
목 표	공익 추구, 다원적	사익 추구, 일원적
대 상	국 민	일부 고객
정치적 성격	정당·이익단체·의회·국민의 영향, 통제·감독을 직접 받음(정치성).	정치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며, 영향을 받아도 그 정도가 약함(비정치성).
법적 규제	엄격한 법적 규제, 타율성	재량적, 자율성
재화 구분	독점성, 비경쟁성, 비시장성(공공재)	경쟁성, 시장성(민간재)
공개성	공 개(정보공개법)	비공개
능률 측정	가치문제로 계량화 곤란	사실문제로 계량화 용이
신분 보장	강(노동시장의 경직성)	약(노동시장의 유연성)

52. 행정(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
- ②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재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 ③ 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④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 ⑤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답 ②]<출제의도>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 뿐만 아니라 기술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53. 정부의 정책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정책목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수단도 달라진다. 다음 중 정책문제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문제는 공공성이 강하다.
- ② 정책문제는 주관적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 ③ 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의존적이다.
- ④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 ⑤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 ⑤]<출제의도>정책문제는 동태적이다.

<참고> 정책문제의 특성(W. Dunn)

정책문제는 상호 의존성·주관성·인공성·역사성·공공성·동태성·창조성·인과성의 특성이 있으며, 정책문제의 주관성이나 인공성은 정책문제의 정의가 정책분석가나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지니

고 있는 증거들에 따라 주관적으로 구축하는 인공적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54.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예산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 ② 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이다.
-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 ⑤ 잠정예산은 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정답 ①] <출제의도> 예산제도를 묻는 지문이다. ②는 추가경정예산, ③은 수정예산이다.

<참고> 준예산 · 잠정예산 · 답습예산 · 가예산(예산의 불성립시 대처방안)

(1) 준예산

-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적용범위
 -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 · 운영비
 - ㉡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공무원 보수나 사무처리경비 등)
 -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 ③ 일단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미 지출한 금액은 당해 연도 예산 중에서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며, 준예산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된다.
- ④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준예산 제도는 1960년 제3차 개헌(제2공화국) 때 우리나라 헌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 ⑤ 우리나라는 편성한 적은 없다(날치기 통과).

(2) 잠정예산

-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몇 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국고로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한 적이 없다.

(3) 답습예산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제도로써 현재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4) 가예산

잠정예산과 같으나 '1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으며, 우리나라 제1공화국 때 채택되었다.

● 잠정예산 · 가예산 · 준예산 · 답습예산의 비교 ●

종 류	기 간	국회의 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한국의 채택
잠정예산	무제한(수개월)	필 요	전반적	영국, 캐나다, 일본	
가예산	1개월	필 요	전반적	프랑스	제1공화국
준예산	무제한	불필요	한정적	독일, 한국	제2공화국 이후
답습예산	무제한	필 요	전반적	미 국	

55. 현행 감사원법 상 회계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공무원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 ② 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며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의 경우는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을 포함해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감사원은 감사절차 및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④]<출제의도>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원장을 포함해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5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론 - 로즈(R.A.W.Rhodes) - 민관협력 네트워크
- ② 생태론 - 리그스(F.W.Riggs) - 행정체제의 개방성
- ③ 공공선택론 - 오스트롬(V.Ostrom) - 정치경제학적 연구
- ④ 후기행태주의 - 이스턴(D.Easton) -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 ⑤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D.Osborne)과 게블러(T.Gaebler) - 기업가적 정부

[정답 ④]<출제의도> 행정학의 패러다임을 묻는 지문으로 행정행태론을 비판하여 등장한 후기행태주의(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이다. ④는 신행정학을 말하며 Waldo, Frederickson 등이 있으며 가치중립적이 아닌 가치판단적, 과학적 연구가 아닌 처방적 연구를 말한다.

<참고> 행정학이론의 발달(paradigm)

구 분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행태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이론	신공공서비스이론
시 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행정 2원론	정치·행정 1원론	새 정치·행정 2원론	새 정치·행정 1원론	새 정치·행정 1원론	㉠ 작은정부 (조타수, 탈규제화)	㉠ 작은정부 (분권화, 조타수)	㉠ 신공공관리론 비판 ㉡ 서비스제공자
공행정과 사행정	공·사행정 1원론	공·사행정 2원론	공·사행정 1원론	공·사행정 2원론	공·사행정 2원론	㉢ 신자유주의(노동시장의 탄력성) ㉣ 기업가형	㉢ 공동체주의(NGO참여) ㉣ 경쟁보다는 협력	㉢ 담론이론 ㉣ 공익, 심의 민주주의가치,
과학성	과학성	기술성 중시	인간행태의 과학	기술성 중시	기술성			

기술성	중시		성 중시 (논리 실증주의 에 입각)		(치방성)	정부(효율성) ㉔ 분권화 ㉔ 정치, 행정 2원론 ㉔ Hood	㉔ 주인으로 ㉔ 형평성 ㉔ 정치, 행정 1원론 ㉔ Rhodes	형평성, 정의 ㉔ 고객이 아니 라 시민 모두에 게 봉사 ㉔ 정치, 행정 1원론 ㉔ Denhardt
행정이념	능률성 (기계적 능률성)	민주성 (사회적 능률성)	가치중립성, 협동이론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행정변수	구 조	인 간	행 태	발전적 행정인(가치주의)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 (원리주의)	인간관계론과 는 별개임.	행태론 (사회·심리학 적 접근방법)	불균형이론	현상학적 접근			
학 자	Wilson, Gulick, Willoughby	Appleby, Dimock	Simon, Barnard	Esman, Weidner	Waldo, Frederickson			
조직관	고전적 조직 이론 (기 계 적·폐쇄적· 정태적 조직)	신고전적 조직 (폐쇄체제)	• 현대적 조직이론 : 유기적·동태적·개 방적 조직(외부환경 중시) • 주요 이론모형 : 의사결정모형, 체제모 형, 사회체제모형, 개방체제모형, 상황 이론, 거래비용이론, 신제도주의			현대 조직이론	현대 조직이론	현대 조직이론
재무행정	통제중심(LIBS, 품목별 예산) ⇨ 관리중심(PBS, 성과주의 예산) ⇨ 계획중심(PPBS, 계획예산) ⇨ 감축기능(ZBB, 영기준 예산)					• 신성과주의 예산 • 산출예산제도 • 프로그램 예산제도 • Top-down 예산제도		

57.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 ②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ONE 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 ④ 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 ⑤ 전자정부는 정보공개를 촉진하며, 인터넷, 키오스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정답 ①] <출제의도> 전자정부 발달순서를 묻는 지문이다.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인터넷의 발전에서 모바일 기술로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로 진화하였다.

<참고>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 정부 비교

구 분	전자정부(EG)	유비쿼터스 정부(UG)
기 술	PC와 웹기술 등 일반적인 인터넷 기술 이용, web2.0	환경에 내재된 컴퓨터와 사물이 통합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컴퓨팅환경을 구축, 브로드밴드와 무선 & 와이파이, web3.0
정부서비스 전달목표	정부간, 정부와 시민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속·투명한 서비스 제공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초점	신속성·투명성·효율성·민주성	고객지향성·지능성·형평성·실시간성

58.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조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 ② 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 ③ 학습조직은 결정과 기획 등 핵심기능만 남기고 기타 집행사업기능을 각각 전문 업체에 위탁경영하여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 ④ 학습조직은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 ⑤ 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정답 ③]<출제의도> ③은 Network구조이다

<참고> 학습 조직(Learning Organization)

(1) 개 념

최근 조직혁신의 기법으로서 벤치마킹에 이어 학습 조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는 창조적으로 학습하는 자만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특 성

- ① 후기기업가조직(post-entrepreneurial organization)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더 많은 신속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 ② 조직구성원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을 강조한다.
- ③ 유기적 조직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적 조직 유형의 대안으로 나타났다.
- ④ 학습 조직은 격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하고 조직의 내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을 추구한다.
- ⑤ 보상체계는 개인별 성과급 위주가 아닌 공동체주의에 입각한다.
- ⑥ 학습 조직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능숙한 조직이다. 학습을 통해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새롭고 포용력 있는 사고능력을 배양하며, 자신을 변화시킨다.
- ⑦ 부서간 경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며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한다.
- ⑧ 학습 조직의 기본정신은 인간존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있다. 학습 조직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이것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
- ⑨ 학습 조직은 단기간의 투자를 통해 당면문제를 치료하거나 특정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혁신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성원 전체의 학습능력을 높여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 ⑩ 기본단위는 통합 기능팀이며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며 자아실현인간이나 공동의 비전을 제시한다.
- ⑪ 고도의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하며 권한위임을 강조한다.
- ⑫ 선발된 조직구성원이 문제인지와 해결에 관여하는 실험조직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지식창출의 주체가 된다.
- ⑬ 미들업다운 관리(middle-up-down management)란 Nonaka의 '지식창조기업'에서 등장하는 말로 흔히 디지털 시대에 정보화로 인하여 중간관리계층이 축소한다는 이론에 대한 입장을 반박하는 이론이다. 미들업다운 관리방식이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관리전략으로서 중간관리자가 최고경영층의 비전과 부하직원의 창의성을 통합하고, 계층 상호간의 역동성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경영이론이나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정보조직모형에서는 미들업다운 관리방식에 의하여 중간관리자가 지식창출의 핵심리더로서 최고관리층과 실무작업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 관료조직과 학습조직 ●

구 분	관료조직	학습조직
편 의	조직적 권력	팀워크
인 간	원자화	능동적 자아
업무배분	원자적 구조(atomistic structure)	관계적 접근
의사결정의 틀	개인적 학습	공동체적 자아
미래 행동의 기반	최근의 과거 경험	온라인(on-line) 학습
업무의 기초	독점적 권한	공동생산
행 동	합리적 목적	변화를 위한 학습
변화 발생 상황	조직의 자기정체성 및 안정성	지식의 창출
업무수행	자율적 행동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
목표 확인	경계화	탈 경계화
관리적 개선 결과	통제된 생산성	자율적 생산성

59.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선출하여 구성한다.
- ②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 ③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권한이다.
- ④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 ⑤ 우리나라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으며,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⑤]<출제의도>지방자치법을 묻는지문이다 ①은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내에 교육위원

으로 구성되며,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는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전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사무를 말하며 규칙으로 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사무를 처리한다. ③은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④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 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다.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특별시, 광역시, 도
㉠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	㉠ 환경부지사 용어 대신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은 (X)
㉡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	㉡ 기초단체장은 선거로 선출(정무직)
㉢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	㉢ 자치경찰(X)
㉣ 단층제, 즉 기초단체를 구성하지 않음	㉣ 복층제

60.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행정 이론은?

인간행위를 연구대상으로 정립했으며 행정연구에 과학주의를 도입하여 가치중립적인 객관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계량적 연구방법론의 강조로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① 과학적 관리론
- ② 인간관계론
- ③ 행정체제이론
- ④ 신공공서비스론
- ⑤ 행정행태론

[정답 ⑤]<출제의도> 행정행태론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행정행태론

개념

- (1) 1920년대 과학적 관리법(구조, 능률성 중시)^{비판}→ 1940년대 행정행태론(인간, 행태, 사실)^{비판}→1970년대 신행정학(인간, 가치, 후기행태주의)
- (2) 합리적 조직이나 제도·절차 또는 이념 등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인간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행정현상을 분석하려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식(consciousness)’, ‘마음(mind)’ 대신에 객관화·외면화된 심리적 경향이나 행태를 중심으로 조직 내의 인간행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3) 다양한 인간행태(방법론적 개체주의)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경험적 검증을 거쳐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규명한 후 이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행태론이다.
- (4) 행정현상을 경험적·실증적 입장에서 다루며, 이론과 실증적 조사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논리실증주의)

발달배경

- (1) 심리학자인 왓슨(J. B. Watson)이 1925년에 프로이드계의 추상적 전통성을 비판하고 ‘마음’ 대신에 ‘인간의 행태’를 연구대상의 중심개념으로 삼아 그 규칙성과 법칙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 제2차 세계대전 후 1949년 미국 Carnergie학파의 밀(J. C. Mill) 교수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 (3) 행정학에 행태론을 도입하여 체계화시킨 학자는 사이먼(H. A. Simon)이며, 「행정행태론(1945)」을 저술했다.
 - ① Simon은 과학적 원리야말로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원리주의를 비판하였다.
 - ② Simon은 정치·행정의 관계를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하고, 행정의 과학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은 가치문제를 배제한 사실분야에 한정하여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③ Simon은 만족모형에서 의사결정을 강조하였다.
- (4)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 한국 행정연구에 도입하였다.

특 성

- (1) 주관적 경험에 의한 인간연구보다는 관찰자에 의해 객관시되는 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외면적 행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집, 경험적·실증적 검증, 입증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행태의 유형화·체계화·규칙화에 역점을 두어 행정의 과학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 (2)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3) 경험적 보수주의 성향을 중시한다.
- (4)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행정인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신념체계, 가치가 내포된 요소들을 행태에 포함시킨다(행정문화의 중시).
- (5)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중시한다.
- (6)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 (7) 가치중립성의 입장이다(새 정치·행정2원론, 공·사행정1원론).
- (8) 순수과학적 성격을 지닌다(자연과학·순수과학적인 통계학이 사용됨).
- (9)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을 중시한다(협동성을 지닌 의사결정과정으로 봄).
- (10)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접근을 중시하여 행정의 과학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즉 심리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자연과학 등에서 그 필요한 기법들을 가져온다.
- (11) 비엔나학파에서 시도한 사회현상의 과학적 방법론 적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참고> 접근법

구 분	객관주의	주관주의
존재론적 성격	실재론(實在論)	명목론(名目論)
인식론적 성격	실증주의(實證主義)	반실증주의(反實證主義)
인간의 본성	결정론(決定論) - 종속변수	임의론(任意論), 주의주의(主意主義) - 인간은 독립변수
방법론적 성격	보편성, 결과	특수성, 과정
이론에시	논리실증주의	현상학

2. 행정행태론의 접근방법 비교

행정행태론	논리실증주의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
- 조직구성원의 행태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 심리학·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의 큰 도움을 받았다. -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며, 사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 경험주의를 강조한다. - 행정이론의 과학화를 추구한다. -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별한다. -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중시한다. - 행정현상의 논리적 분석을 중시한다.	C. I. Barnard의 제자인 H. A. Simon이 '행정행태론'에서 연구하였다. - 협동적 집단활동을 연구한다. - 만족모형에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 관찰가능한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 행정현상을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한다. - 원리주의를 비판한다. - 이론구성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시 한다. - 계량적 분석을 주로 한다.	-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한다. - 특정사회의 안정된 행동유형을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나, 복잡하고 비합리적 요인이 지배하는 불안정한 사회의 분석에는 비효과적이다. - 물리학을 비롯한 순수과학의 세계를 중시한다. - 과학주의에 따른 비인간화를 강조한다.	- 만족모형에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 제한된 합리성을 중시한다. - 권위란 타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힘이라고 강조한다.

□ 한 계

(1) 연구범위와 대상의 축소

(2) 기술 및 방법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조작주의 초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계량화하기 쉬운 부분만을 연구하고, 자료조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복잡하고 유동적인 개발도상국의 행태유형을 분석하는 데는 적용이 곤란하다.

(4) 신행정론자의 비판

이론이나 설명(과학성)에는 강하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성이나 적실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